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(황규복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 1047

발의년월일: 2019년 10월 14일

발 의 자 : 황규복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권순선, 김호진, 김호평, 노승재,

문병훈, 박기재, 박상구, 봉양순,

안광석, 이광성, 이호대, 최기찬,

최영주, 홍성룡 의원 (14명)

1. 제안이유

-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다변화 및 사용자 증가로 시민과의 온·오 프라인 소통이 점점 다양화 되고 있음.
- 이에 시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시민, 시민 소통, 시민 참여, 시정 정보, 소통 매체, 소셜 미디어 등의 정의(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, 시민의 권리와 책무(안 제2조, 안 제3조)
- 시민소통 활성화 사업내용, 운영과 지원(안 제6조 ~ 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공직선거법」등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를 형 성하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 시정을 구현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시민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
 - 나. 90일 이상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
 - 다.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
- 2. "시민 소통"이란 시가 시의 정책에 대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 참여를 통해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.
- 3. "시민 참여"란 시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시민의 생각이나 의견, 경험, 정보 등을 시와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.
- 4. "시정 정보"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.
 - 가.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

- 나. 환경, 의료, 교통, 조세 등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 및 교육, 문화, 예술, 체육, 보건, 지역 등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
- 다. 시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
- 라. 그 밖에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5. "소통 매체"란 시가 제공하는 정보를 시민이 받고 이에 대해 시민의 의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일체의 온·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.
- 6. "소셜미디어"란 시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,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(SNS)와 홈페이지, 블로그, 유튜브 등 온라 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시민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 공무원 및 시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며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.

제2장 권리와 책무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에 의한 시민의 의견을 정책입안 시 고려함으로써 시민 참여 시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시민의 권리와 책무) ① 시민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·집행·평가·환류 등 단계별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.
 - ② 시와의 소통에 참여하는 시민은 이 조례 및 시의 관련 지침을 준수 함으로써 시의 시민 소통 활성화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장 시민 소통 활성화 사업 운영 및 지원

- 제6조(사업내용 및 운영) 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 - 1.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, 여론조사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
 - 2.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, 관련 콘텐츠 제 작 및 이의 활용,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 및 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제공의 확산
 - 3. 서울 도시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
 - 4. 민원실 운영 등 통합민원 처리 및 이의 품질관리 등 민원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

- ② 시장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시민 소통 참여 활성화 등의 운영지원) 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 홍보 등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시민 참여 행사를 온·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하 여 운영할 수 있다.
 - 1.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
 - 2. 주요 시책사업·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
 - 3.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·기념하고자 하는 경우
 - 4. 인터넷 및 소설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시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고 자 하는 경우
 - 5. 그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과의 소통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
 - 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·운영하는 경우 시민의 참여 실적·횟수 및 소통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를 지급하거나 추첨, 심사를 통해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시민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수 있다.
 -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의 종류 및 액수 등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해당 소 통 매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 다.

- 제8조(표창 등) ① 소통 평가·여론조사 및 소셜미디어 등 소통매체를 통해 시정 발전 또는 시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 여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른다.
- 제9조(시행규칙)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시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업무 여건에 따라 시민 소통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